

원격수업 운영 규정

제정 2019.06.10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8조의4 규정에 의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규정에서 "원격수업"이라 함은 교수-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하며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%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.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 모두를 의미한다.

②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이 혼합되어 있는 수업의 경우에도 원격수업의 비중이 전체수업(평가 활동 제외) 시수의 70% 이상이면 원격수업으로 인정한다.

제3조(운영위원회) 원격수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를 위해 「원격수업 운영위원회」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고, 이를 「교육과정혁신위원회」가 겸직한다.

제4조(운영교과) 원격 수업의 운영교과목은 스쿨별 교육과정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제5조(수강대상) 원격수업 운영교과목을 수강 신청 할 수 있는 자는 우리대학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타대학 및 일반인에게 개방 할 수 있다.

제6조(수강신청) ① 수강신청 방법 및 시기는 매 학기(계절수업 포함) 일반교과 수강신청과 같다.

② 원격수업에 대한 수강신청은 학기당 2과목 이내로 한다. 다만, 하계·동계 계절수업은 2과목 이상 수강신청 할 수 있다.

제7조(수업시수)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은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 원격수업의 강의콘텐츠는 1차시 당 콘텐츠 진행 시간이 25분 이상(1학점기준) 되도록 제작하고 콘텐츠 진행 시간을 포함한 1차시 총 학습 시간은 50분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제8조(수업) ① 각 원격수업에 대한 수업 방식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원격수업에 대한 수강신청자가 10인 미만일 때는 이를 폐강 할 수 있다.

제9조(성적평가) 성적평가는 출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대학 e-러닝기반 학점인정 컨소시엄등을 통해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해 외국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는 온라인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.

제10조(시수인정 및 강사료) 원격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의 시수인정 및 강사료 산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